



2020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9년	2020년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조정 및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20% 감면 - 1~2년 이내 : 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을 조정 및 세분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6개월 ~2년 이내 : 10% 감면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6개월 이내 : 2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조정 및 세분화 - (좌 동)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 <li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좌 동)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구 분	2019년	2020년												
<p>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p>	<p>■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p> <p>○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p> <p>*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p> <p>-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p> <p>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 '12년 이후분 퇴직소득</p> <p>※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 소득 - '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p> <p>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p> <p>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12년 이후 근속연수 X 지급배수(3배)</p> <p>*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p>	<p>■ 지급배수 하향 조정</p> <p>① (좌 동)</p> <p>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p> <p>'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12년~'19년 근속연수 X 지급배수(3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 급여 X 1/10 X '20년 이후 근속연수 X 지급배수 (2배수)</p> <p>※ '12.1.1. ~ '19.12.31.까지 적용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p>												
<p>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p>	<p>■ 근로소득공제</p> <table border="1" data-bbox="483 1016 903 1252"> <thead> <tr> <th>총급여</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70%</td> </tr> <tr> <td>500만 ~ 1,500만원 이하</td> <td>40%</td> </tr> <tr> <td>1,500만 ~ 4,5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4,500만 ~ 1억원 이하</td> <td>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td> </tr> </tbody> </table> <p>< 추 가 ></p>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 ~ 1,500만원 이하	40%	1,500만 ~ 4,500만원 이하	15%	4,500만 ~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p>■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p> <p>○ 공제 한도 : 2,000만원</p>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 ~ 1,500만원 이하	40%													
1,500만 ~ 4,500만원 이하	15%													
4,500만 ~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p>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p>	<p>■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p> <p>○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포함)</p> <p>○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p> <p>○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p> <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p>	<p>■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p> <p>○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p> <p>○ (좌 동)</p> <p>○ (좌 동)</p> <p>○ (좌 동)</p> <p>○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p>												
<p>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p>	<p>■ 자녀세액공제 대상</p> <p>○ 7세 이상의 자녀</p> <p>-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p>	<p>■ 대상 조정</p> <p>○ (좌 동)</p> <p>- < 삭 제 ></p>												
<p>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p>	<p>■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p> <p>* 간주임대료 = (보증금-3억원) X 60% X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p> <p>**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 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p> <p>○ 연 2.1%</p>	<p>■ 이자율 인하</p> <p>○ 연 2.1% → 1.8%</p>												

구 분	2019년	2020년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납입액 24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2022.12.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 (공제대상 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공연 : 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지정 기준 등에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현제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 (좌 동)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포함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 (청년은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업종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좌 동)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 (감면율) 70% (청년은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좌 동) ○ (좌 동) ○ (좌 동)

구 분	2019년	2020년																						
<p>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p>	<p>< 신 설 ></p>	<p>■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p> <p>○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p> <p>* 세부요건</p> <p>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p> <p>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p> <p>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p> <p>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p> <p>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p> <p>**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p> <p>○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p> <p>○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p> <p>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p> <p>*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p> <p>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p> <p>○ (적용기한) 2022.12.31.</p> <p>※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농특령§4⑥)</p>																						
<p>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p>	<p>■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p> <table border="1" data-bbox="483 1133 903 1525"> <thead> <tr> <th>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th> <th>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 (5.5천만원)</td> <td>400만원 (700만원)</td> <td>15%</td> </tr> <tr> <td>1억원 이하 (1.2억원)</td> <td></td> <td rowspan="2">12%</td> </tr> <tr> <td>1억원 초과 (1.2억원)</td> <td>300만원 (700만원)</td> </tr> </tbody> </table> <p>< 신 설 ></p> <p>< 신 설 ></p>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p>■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p> <table border="1" data-bbox="975 1133 1394 1525"> <thead> <tr> <th>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th> <th>50세 이상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 (5.5천만원)</td> <td>600만원 (900만원)</td> <td>15%</td> </tr> <tr> <td>1억원 이하 (1.2억원)</td> <td></td> <td rowspan="2">12%</td> </tr> <tr> <td>1억원 초과 (1.2억원)</td> <td>300만원 (700만원)</td> </tr> </tbody> </table> <p>○ (적용제외 대상)</p> <p>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p> <p>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p> <p>○ (적용기한) 2022.12.31.</p>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300~400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게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 추가 납입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 - ISA계좌 만료일부턴 60일내 ISA계좌 가입자 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 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산후조리원 비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 부금 공제 계산방법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 금 평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 ○ (지정기부금) Max [시가, 장부가액] ○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방식을 지정 기부금과 일치 ○ (좌 동) ○ (법정기부금) Max [시가, 장부가액]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한 선택 적 분리과세* 허용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 (분리과세 세율 : 20%) ○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 상기 이외의 위약금·배상금 현재 분리과세 ** (소득세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행 ○ 중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등이 근로와 관계 없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 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 퇴직소득을 중간지급 받은 경우 중간지급된 퇴직 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하여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근속연수를 통산하고 중간지급 시점에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 ○ 중업원의 임원 전환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 양도 등의 사유로 다른 사업장으로 진출 ○ 상근임원의 비상근임원 전환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구 분	2019년	2020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li style="padding-left: 20px;">*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li style="padding-left: 20px;">(3분기분) 10.10. (4분기분) 1.10.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li style="padding-left: 20px;">*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한 연장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li style="padding-left: 20px;">* (1분기분) 4.30. (2분기분) 7.31. <li style="padding-left: 20px;">(3분기분) 10.31. (4분기분) 1.31. ■ 제출기한 연장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li style="padding-left: 20px;">* (상반기분) 7.31. (하반기분) 1.3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범위 조정 및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 반기 근무분에 대한 과세소득 ○ 반기 근무분에 대한 비과세소득 ■ 소득자 범위 ○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포함 ■ 세부 서식 ① 근로소득(별지 제24호의4(1)) ② 거주자 사업소득(별지 제24호의4(2)) ③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별지 제24호의4(3)) ④ 비거주자 사업·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별지 제24호의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 <li style="padding-left: 20px;">* 귀속연도 후 지급분은 미제출 <li style="padding-left: 40px;">< 삭 제 > ■ 소득자 범위 축소 ○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제외 ■ 세부 서식 통·폐합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삭 제) ②에 통합 ④ (좌 동)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 (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li style="padding-left: 20px;">* 최다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 최다지분자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li style="padding-left: 40px;">< 추 가 > <li style="padding-left: 40px;">< 추 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 (좌 동)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li style="padding-left: 20px;">*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X 지분율 ②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li style="padding-left: 20px;">* 기준시가(9억원), 지분율(30%)은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다음 순서(①→②)로 부부 중 1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②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li style="padding-left: 20px;">*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

2020년 연말정산 요약표

구 분	세부내용																											
인적 공제	<p>• 공제대상자 중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명당 150만원 공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rowspan="2">공제대상자</th> <th rowspan="2">공제금액</th> <th colspan="3">기본공제조건</th> </tr> <tr> <th>생계요건</th> <th>나이요건</th> <th>소득금액요건</th> </tr> </thead> <tbody> <tr> <td>본인</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1명당 1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td> </tr> <tr> <td>배우자</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동거여부 불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직계비속·입양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20세 이하</td> </tr> <tr> <td>직계존속</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60세 이상</td> </tr> <tr> <td>기타 부양가족</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일시퇴거자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td> </tr> <tr> <td>기초수급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위탁아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18세 이하</td> </tr> </tbody> </table> <p>※ 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 위탁아동은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 포함 ※ 생계요건 중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 인정 ※ 소득금액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용소득금액 제한 없음(분리과세 원천징수)</p>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기본공제조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	1명당 150만원	-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동거여부 불문	-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기타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일시퇴거자 포함)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이하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기본공제조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	1명당 150만원	-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동거여부 불문	-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기타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일시퇴거자 포함)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이하																											
<p>•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공제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추가공제</th> <th>공제금액</th> <th>공제대상</th> </tr> </thead> <tbody> <tr> <td>경로우대자</td> <td>1명당 100만원</td> <td>만 70세 이상 (1950.12.31.이전 출생)</td> </tr> <tr> <td>장애인</td> <td>1명당 200만원</td> <td>장애인·상이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td> </tr> <tr> <td>부녀자</td> <td>연 50만원</td> <td>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td> </tr> <tr> <td>한부모가족</td> <td>연 100만원</td> <td>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td> </tr> </tbody> </table> <p>※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만 적용</p>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 (1950.12.31.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상이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 (1950.12.31.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상이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공통서류</td> <td>주민등록표등본 (단,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td> </tr> <tr> <td rowspan="4">추가 서류</td> <td>일시퇴거자</td> <td>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td> </tr> <tr> <td>입양자</td> <td>입양관계증명서</td> </tr> <tr> <td>기초수급자</td> <td>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td> </tr> <tr> <td>위탁아동</td> <td>가정위탁보호확인서</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복지카드)등 사본, 장애인증명서(해당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td> </tr> </tbody> </table>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단,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추가 서류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	입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복지카드)등 사본, 장애인증명서(해당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단,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추가 서류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																										
	입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복지카드)등 사본, 장애인증명서(해당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연금보험료 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금액</th> <th>공제대상</th> </tr> </thead> <tbody> <tr> <td>국민연금보험료</td> <td>전액</td> <td>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td> </tr> <tr> <td>공적연금보험료</td> <td>전액</td> <td>공무원, 교직원 등의 기여금 또는 부담금</td> </tr> </tbody> </table> <p>※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분을 포함</p>	구 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공무원, 교직원 등의 기여금 또는 부담금																		
구 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공무원, 교직원 등의 기여금 또는 부담금																										

구 분		세부내용																																								
특별 공제	보험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에 대해 전액공제 *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포함 																																								
	주택 자금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금액</th> <th>공제요건</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td> <td>금융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②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td> </tr> <tr> <td>거주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② • 기획 재정부령 이자율(1.8%)이상으로 차입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td> </tr> <tr> <td>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td> <td>이자 상환액^③</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5억원이하)^④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금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단, '15년 이후 차입 분의 경우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공제 가능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또는 분양계약서 • 기준시가 조회 화면 캡처 </td> </tr> </tbody> </table> <p>①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p> <p>② 전세계약 연장(갱신)시 차입한 차입금 및 당초 공제대상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 시에도 공제 허용 (2014.02.21. 이후 허용)</p> <p>③ 공제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차입시기</th> <th>상환유형(또는 상환기간)</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1.12.31 이전</td> <td>10년 이상~15년 미만 (2003.12.31 이전 차입금에 한함)</td> <td>연 600만원</td> </tr> <tr> <td>15년 이상</td> <td>연 1,000만원</td> </tr> <tr> <td>30년 이상</td> <td>연 1,500만원</td> </tr> <tr> <td rowspan="2">12.01.01 ~14.12.31</td> <td>15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td> <td>연 1,500만원</td> </tr> <tr> <td>상기 이외의 기타 대출</td> <td>연 500만원</td> </tr> <tr> <td rowspan="3">15.01.01 이후</td> <td>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td> <td>연 1,800만원</td> </tr> <tr> <td>15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td> <td>연 1,500만원</td> </tr> <tr> <td>10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td> <td>연 300만원</td> </tr> </tbody> </table> <p>*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의 통합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와 동일함</p> <p>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14.01.0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기준시가 13년 이전분 3억원 이하, 14년 이후분 4억원 이하, 19년 이후분 5억원 이하 - 1주택 보유세대가 대체 취득한 주택 (단, 연말현재 1주택보유 세대여야 함) 				구 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제출서류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②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② • 기획 재정부령 이자율(1.8%)이상으로 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 상환액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5억원이하)^④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금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단, '15년 이후 차입 분의 경우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공제 가능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또는 분양계약서 • 기준시가 조회 화면 캡처 	차입시기	상환유형(또는 상환기간)	공제한도	11.12.31 이전	10년 이상~15년 미만 (2003.12.31 이전 차입금에 한함)	연 600만원	15년 이상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12.01.01 ~14.12.31	15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1,500만원	상기 이외의 기타 대출	연 500만원	15.01.01 이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1,8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1,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300만원
	구 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제출서류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②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② • 기획 재정부령 이자율(1.8%)이상으로 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 상환액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5억원이하)^④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금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단, '15년 이후 차입 분의 경우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공제 가능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또는 분양계약서 • 기준시가 조회 화면 캡처 																																							
차입시기	상환유형(또는 상환기간)	공제한도																																								
11.12.31 이전	10년 이상~15년 미만 (2003.12.31 이전 차입금에 한함)	연 600만원																																								
	15년 이상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12.01.01 ~14.12.31	15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1,500만원																																								
	상기 이외의 기타 대출	연 500만원																																								
15.01.01 이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1,8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1,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300만원																																								
기부금 (이월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2.31 이전 지출한 법정·지정기부금으로 이월된 기부금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금액</th> <th>공제요건</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개인연금저축</td> <td>연간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td> <td>2000.12.31까지 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td> <td>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제출서류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2000.12.31까지 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구 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제출서류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2000.12.31까지 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사업/근로소득금액</th> <th>공제한도</th> <th>공제요건</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노란우산공제</td> <td>4천만원이하</td> <td>500만원</td> <td rowspan="3">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td> <td rowspan="3">공제부금 납입증명서</td> </tr> <tr> <td>4천만원~1억원</td> <td>300만원</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p>공제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12.31 이전 가입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 				구 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공제요건	제출서류	노란우산공제	4천만원이하	500만원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구 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공제요건	제출서류																																						
노란우산공제	4천만원이하	500만원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구 분	세부내용																																							
주택마련 저축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금액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공제금액</th> <th colspan="2">공제요건</th> <th rowspan="2">제출서류</th> </tr> <tr> <th>2009.12.31 이전 가입</th> <th>2010.01.01 이후 가입</th> </tr> </thead> <tbody> <tr> <td>주택청약 종합저축</td> <td>납입액(연240만원 한도)의 40%</td> <td>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td> <td>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td> <td rowspan="2">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td> </tr> <tr> <td>청약저축</td> <td>납입액(연240만원 한도)의 40%</td> <td>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연중무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국민 주택규모 주택1채보유</td> <td>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제출서류	2009.12.31 이전 가입	2010.01.01 이후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연240만원 한도)의 40%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청약저축	납입액(연240만원 한도)의 40%	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연중무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국민 주택규모 주택1채보유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구 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제출서류																																	
		2009.12.31 이전 가입	2010.01.01 이후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연240만원 한도)의 40%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청약저축	납입액(연240만원 한도)의 40%	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연중무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국민 주택규모 주택1채보유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전용면적85m²(수도권 이외는 100m²)을 말함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대상</th> <th>공제금액</th> <th>공제시기</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창업·벤처전문PEF 등에 투자</td> <td>투자금액의 10~100%* (소득금액의 50%한도)</td> <td>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원칙 (개정)**</td> <td>·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td> </tr> </tbody> </table>				공제대상	공제금액	공제시기	제출서류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창업·벤처전문PEF 등에 투자	투자금액의 10~100%* (소득금액의 50%한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원칙 (개정)**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공제대상	공제금액	공제시기	제출서류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창업·벤처전문PEF 등에 투자	투자금액의 10~100%* (소득금액의 50%한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원칙 (개정)**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p>*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 :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70% 5,000만원 초과 : 30%</p> <p>** 투자자 요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선택 가능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에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p>																																								
그 밖의 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금액</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제한없음)의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td> <td>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td> </tr> <tr> <td>②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td> <td>· 공제금액=㉠+㉡+㉢+㉣+㉤ { 공제한도: 33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작은 금액 }</td> <td>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td> </tr> <tr> <td>③ 현금영수증</td> <td> ㉠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분의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공제한도(2020년 한시적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330만원</td> </tr> <tr> <td>7천만원~1.2억원</td> <td>28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30만원</td> </tr> </tbody> </table> *공제율(2020년 한시적 공제율 차등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월</th> <th>4 ~ 7월</th> <th>그 외</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30%</td> <td rowspan="4">80%</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td> <td>60%</td> <td>30%</td> </tr> <tr> <td>도서·공연·미술관 등</td> <td>60%</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80%</td> <td>40%</td> </tr> </tbody> </table> </td> <td>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금액	제출서류	① 신용카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제한없음)의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②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 공제금액=㉠+㉡+㉢+㉣+㉤ { 공제한도: 33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작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③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분의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공제한도(2020년 한시적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330만원</td> </tr> <tr> <td>7천만원~1.2억원</td> <td>28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30만원</td> </tr> </tbody> </table> *공제율(2020년 한시적 공제율 차등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월</th> <th>4 ~ 7월</th> <th>그 외</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30%</td> <td rowspan="4">80%</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td> <td>60%</td> <td>30%</td> </tr> <tr> <td>도서·공연·미술관 등</td> <td>60%</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80%</td> <td>40%</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구분	3월	4 ~ 7월	그 외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4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
	구 분	공제금액	제출서류																																					
① 신용카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제한없음)의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②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 공제금액=㉠+㉡+㉢+㉣+㉤ { 공제한도: 33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작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③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분의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공제한도(2020년 한시적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330만원</td> </tr> <tr> <td>7천만원~1.2억원</td> <td>28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30만원</td> </tr> </tbody> </table> *공제율(2020년 한시적 공제율 차등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월</th> <th>4 ~ 7월</th> <th>그 외</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30%</td> <td rowspan="4">80%</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td> <td>60%</td> <td>30%</td> </tr> <tr> <td>도서·공연·미술관 등</td> <td>60%</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80%</td> <td>40%</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구분	3월	4 ~ 7월	그 외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4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구분	3월	4 ~ 7월	그 외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40%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table border="1"> <tbody> <tr> <td>공제대상</td> <td colspan="3">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td> </tr> <tr> <td>공제금액</td> <td colspan="3">MIN(출연금액, 400만원(또는 1,500만원*))</td> </tr> </tbody> </table> <p>* '18.01.01. 이후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1,500만원 한도로 공제</p>				공제대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금액	MIN(출연금액, 400만원(또는 1,500만원*))																														
공제대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금액	MIN(출연금액, 400만원(또는 1,500만원*))																																							

구 분		세부내용																	
그 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table border="1"> <tr> <td>공제대상</td> <td>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공제 (연 1,000만원 한도)</td> </tr> <tr> <td>공제금액</td> <td>(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X 50%</td> </tr> </table> <p>※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여성격의 금액을 말함</p>	공제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공제 (연 1,000만원 한도)	공제금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X 50%													
	공제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공제 (연 1,000만원 한도)																	
공제금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X 50%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12.31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대상자</th> <th>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요건 : 가입당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 : 공제 신청한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td> <td>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td> </tr> </tbody> </table> <p>*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 ※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간 공제</p>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요건 : 가입당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 : 공제 신청한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요건 : 가입당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 : 공제 신청한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 항목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연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표준에 합산 <p>※ 종합한도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개인의 벤처기업 등 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공제금액을 말함</p>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산출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p>(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근로자 : 근로소득 X 19%)</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과세표준 X 6%</td> </tr> <tr> <td>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td> <td>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td> </tr> <tr> <td>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td> <td>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X 24%</td> </tr> <tr> <td>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td> <td>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td> </tr> <tr> <td>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td> <td>3,760만원 + (과세표준 - 1.5억원) X 38%</td> </tr> <tr> <td>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td> <td>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X 40%</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1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X 42%</td> </tr> </tbody> </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X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과세표준 - 1.5억원) X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X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X 42%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X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과세표준 - 1.5억원) X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X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X 42%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50%* 감면 <p>* 20.01.01 이후 최초로 근무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적용.</p>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시 소득세의 50% 감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감면요건</th> </tr> </thead> <tbody> <tr> <td>감면대상자</td> <td>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사람</td> </tr> <tr> <td>감면세액</td> <td>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소득세 50% 감면</td> </tr> </tbody> </table>		구분	감면요건	감면대상자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사람	감면세액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소득세 50% 감면										
구분	감면요건																		
감면대상자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사람																		
감면세액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소득세 50% 감면																		

구 분		세부내용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무 후 해당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감면기간 연장 : 5년 → 7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재)취업 시기에 따른 감면요건</th> </tr> <tr> <th>'14년</th> <th>'15년</th> <th>'16년</th> <th>'17년</th> <th>'18년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감 면 대 상 자</td> <td>청년</td> <td>○</td> <td>○</td> <td>○</td> <td>○</td> <td>○^①</td> </tr> <tr> <td>만 60세 이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장애인^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경력단절여성</td> <td>X</td> <td>X</td> <td>X</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감면세액</td> <td colspan="2">50%</td> <td colspan="2">70%</td> <td>70% (청년의 경우 90%)</td> </tr> <tr> <td colspan="2">감면한도</td> <td colspan="5">150만원</td> </tr> <tr> <td colspan="2">감면기간</td> <td colspan="4">3년</td> <td>3년 (청년의 경우 5년)</td> </tr> <tr> <td colspan="2">감면신청</td> <td colspan="5">취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td> </tr> <tr> <td colspan="2">감면추징</td> <td colspan="5">감면부적격자의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105추징</td> </tr> </tbody> </table>						구 분		(재)취업 시기에 따른 감면요건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	감 면 대 상 자	청년	○	○	○	○	○ ^①	만 60세 이상	○	○	○	○	○	장애인 ^②	○	○	○	○	○	경력단절여성	X	X	X	○	○	감면세액		50%		70%		70% (청년의 경우 90%)	감면한도		150만원					감면기간		3년				3년 (청년의 경우 5년)	감면신청		취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					감면추징		감면부적격자의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105추징				
		구 분		(재)취업 시기에 따른 감면요건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																																																																							
		감 면 대 상 자	청년	○	○	○	○	○ ^①																																																																							
			만 60세 이상	○	○	○	○	○																																																																							
			장애인 ^②	○	○	○	○	○																																																																							
			경력단절여성	X	X	X	○	○																																																																							
		감면세액		50%		70%		70% (청년의 경우 90%)																																																																							
		감면한도		150만원																																																																											
감면기간		3년				3년 (청년의 경우 5년)																																																																									
감면신청		취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																																																																													
감면추징		감면부적격자의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105추징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																																																																															
① 2018년 1월 1일 부터 청년의 감면 연령 확대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																																																																															
② 고엽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X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산출세액 - 130만원) X 30%																																																																											
		•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 X 0.008}, 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 X 0.5}, 50만원]																																																																												
	자녀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자녀의 범위		세액공제액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손녀 등 제외) ^①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만 7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 • 자녀 2명 이상 : 1명당 15만원 (2명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자녀수 - 2) X 30만원																																																																													
출산·입양 ^② (20.01.01 이후)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00.01.01 ~ 2013.12.31 출생자에 한해 공제 가능(장애인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② 가족관계증명서상(필수제출서류)의 등록기준으로 공제 																																																																															

구 분		세부내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대상금액</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연금저축</td> <td>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td> <td>연금저축납입증명서</td> </tr> <tr> <td>퇴직연금</td> <td>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td> <td>퇴직연금납입증명서</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대상금액	제출서류	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퇴직연금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납입증명서							
		구 분	공제대상금액	제출서류																	
		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퇴직연금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납입증명서																	
<p>※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후순위로 공제함</p>																					
공제대상금액	MIN (① + ② , 연 700만원) ① 연금저축납입액과 연 400만원* 중 작은 금액 * 만 50세 이상 총급여액수준별 연금저축의 공제한도 차등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총급여액</th> <th>연금저축 개별한도</th> <th>공제대상금액 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50세 이상</td> <td>1억 2천 이하자</td> <td>600만원</td> <td>900만원</td> </tr> <tr> <td>1억 2천 초과자</td> <td>3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 rowspan="2">50세 미만</td> <td>1억 2천 이하자</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1억 2천 초과자</td> <td>300만원</td> <td>700만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연금저축 개별한도	공제대상금액 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50세 이상	1억 2천 이하자	600만원	900만원	1억 2천 초과자	300만원	700만원	50세 미만	1억 2천 이하자	400만원	700만원	1억 2천 초과자	300만원	700만원
	총급여액	연금저축 개별한도	공제대상금액 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50세 이상	1억 2천 이하자	600만원	900만원																		
	1억 2천 초과자	300만원	700만원																		
50세 미만	1억 2천 이하자	400만원	700만원																		
	1억 2천 초과자	300만원	700만원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X 12%* * 총급여액수준별 세액공제를 차등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5,500만원 이하 자</th> <th>5,500만원 초과 자</th> </tr> </thead> <tbody> <tr> <td>세액공제율</td> <td>15%</td> <td>1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자	5,500만원 초과 자	세액공제율	15%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자	5,500만원 초과 자																			
세액공제율	15%	12%																			
세액공제	보험료	구 분	공제대상	세액공제액	제출서류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납입액(연100만원한도) X12% 납입액(연100만원한도) X15%	보험료 납입 증명서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 임이 표시된 상품만 해당																					
특별 세액 공제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대상 의료비																		
		① 난임시술비 ②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③ 그 밖의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나이,소득 제한 없음)에 지출한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 초과 하는 의료비 • 치료·질병예방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기관) • 치료·요양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약국등) •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안경 등 구입비 (1명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의료비 구분	공제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 난임시술비	전액공제	① + ② + MIN[(③ - 실손 의료보험금 - 총급여액 X 3%) , 연 700만원]	①의 공제대상 금액 X 20% + ②와 ③의 공제대상 금액 합계액 X 15%																
		② 본인·65세 이상 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전액공제																		
		③ 그 밖의 부양가족	연700만원																		
<p>※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p> <p>※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p>																					

구 분		세부내용						
세액공제	특별 세액 공제	교육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일반 교육비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 재료비 제외	1명당 300만원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X 15%
					초·중·고	•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수업료·입학금 등) •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재료비 제외 ※ 교복구입비 50만원이내 (중·고등학생)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추가		
				대학생	• 대학교 교육비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 상기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대학원,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본인부담금)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①	한도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기초수급자 포함)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직계존속(장애인 제외) 교육비공제대상 제외 ※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해외교육비도 포함 ① 16.12.31 이전에 대출받은 학자금으로서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을 공제배제								
세액공제	특별 세액 공제	기부금	• 지정기부금 공제순서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구 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공제대상금액 X (100/110)		
				㉡ 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공제대상금액 X 15% (25%*) * 3천만원 초과분은 25%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공제대상금액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X 30%		X 15% (30%*) * 1천만원 초과분은 30%				
④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X 10% + MIN (소득금액* X 20%, 종교단체이외의 기부금 (이월분포함))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X 30%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①-②-③)			※ 14~15년이월기부금 :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 16~18년이월기부금: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종교단체							
표준 세액 공제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 징수세액의 5% 세액공제						

구 분		세부내용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대상</th> <th>공제금액</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td> <td>이자상환액의 3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td> </tr> </tbody> </table>	공제대상	공제금액	제출서류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p>※ 농어촌특별세 대상</p>	
	공제대상	공제금액	제출서류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외국납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공제금액 = MIN (①, ②) ①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② 근로소득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 국외근로제공으로 국외 및 국내에서 지급받은 국외원천소득금액의 합계액임 									
월세액 세액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요건</th> <th>세액공제액</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주요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연말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준주택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③ 거주요건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가 같을 것 </td> <td> <p>월세액 (연750만원한도)X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시 10%)</p>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td> </tr> </tbody> </table>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주요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연말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준주택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③ 거주요건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가 같을 것 	<p>월세액 (연750만원한도)X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시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p>㉠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본인명의로 월세액을 납부하고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p> <p>※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p>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주요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연말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준주택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③ 거주요건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가 같을 것 	<p>월세액 (연750만원한도)X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시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최근 국세청은 연말정산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함으로써 허위영수증 첨부 등 불성실 소득공제신고 대상자를 적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공제 대상으로 통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당공제 대상자는 미납부세액 및 가산세액이 부과됩니다.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 및 회사이미지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점검사항

구 분	유의사항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 중복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이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소득금액 초과자의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02년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과세소득 100만원 초과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의 - 2주택 이상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중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만 소득금액 충족이나 해당 신고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소득이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주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과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되어있는 1주택 자에 한하여 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 기준시가:취득당시 5억원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 ('14년~'18년 취득분:4억원 이하, '13년 이전 취득분:3억원 이하) -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 연말 현재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현재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의 주택 수를 포함하여 2주택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2013년 이전 차입분 :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연말 현재 1주택을 보유 해야만 공제가능 - 2014년 이후 차입분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 해야만 공제가능
주택마련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을 기준으로 2009.12.31 이전의 경우 1주택자의 청약저축은 공제가능하였으나, 2010.01.01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말현재 세대주이며 연중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과다공제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 ○ 15년 이후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능
투자조합 출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시기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이후 출자·투자분은 출자·투자한 연도에 공제받도록 변경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에 공제를 희망할 경우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에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투자금액은 3,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적용시 주의 (공제율은 10%를 적용)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의 가산세가 허위발급 금액의 2%에서 5%로 인상 ○ 부당 기부금 공제 방지를 위해 기부금 표본조사의 범위가 0.5%에서 1.0%로 확대되었으므로 주의
외국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12.31.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기한이 종료되어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 (2015.01.0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주택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
중소기업취업자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시 감면기간 최초 취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청년의 경우 5년)까지 감면 대상이므로 주의
월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한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거주자의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란 가족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0.1.1. 이후 출생)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도 허용)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 (단, 취학·질병·근무·사업형편에 따른 일시외거도 허용)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이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가족요건

- 배우자 : 거주자와 연말 현재 법률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이혼 및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직계비속·입양자 : 직계비속이란 자녀·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등)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란 거주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즉,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 형제자매 : 형제자매에는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초수급자 및 위탁아동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하며,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합니다.

▷ 소득금액요건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 50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33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과 타 소득이 있는 경우 : ㉠ + ㉡ + ㉢ ≤ 100만원

2개 이상의 복수소득(근로소득 및 타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아래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비과세 예시	
① 종합 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소득자의 일용근로소득 • 총급여액 약333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임대료 수입액 등)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작물재배업, 농가부업소득 등(비과세) • 1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를 선택한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액이 516만원 이하 •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
②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총액	•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	
③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 1세대 1주택 이외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추가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추가공제요건	공제금액								
(1)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1950.12.31 이전 출생)	1명당 연 100만원								
(2)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장애인의 범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코드</th> <th>장애인의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td> </tr> <tr> <td>②</td>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td> </tr> <tr> <td>③</td> <td>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td> </tr> </tbody> </table> * 장애등록이 안된 만 6세미만의 아동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 (코드 ①)	코드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명당 연 200만원
코드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 41,470,588원 이하)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신청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연 50만원								
(4) 한부모가족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만을 적용하며, 거주자가 선택하여 적용하거나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증명서류

구분	코드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사본	읍·면·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2	상이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증명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 '장기요양인정서'는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 Q&A 】

Q :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VS 연말에 결혼예정이나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의 배우자공제 여부

A : 연말 현재(12월31일) 혼인신고로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 연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 배우자의 유·무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12월 31일)의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나, 연도 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재혼한 부부로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입양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여부

A : 재혼한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 혼인 중(사실혼 제외)에 출생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부모님이 2020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 적용여부

A : 2020년도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요건을 미충족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여부

A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도 장애인 증명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A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증환자 중 건강보험산정특례자(치매제외)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가 아닌 의료비세액공제 중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의료비를 전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요건

공제요건	금융기관 차입금	개인 간 차입금
1. 세대주요건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2.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차입금요건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닐 것

1. 세대주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014.01.01. 이후부터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본인명으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m²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차입금요건

1)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 공제대상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확대 (2014.2.2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 전세계약 연장(갱신)으로 연장(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추가 등으로 차입한 차입금
-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세금으로 지급한 종전 공제대상 차입금*

* 종전 공제대상 차입금이란 이사 전 전세주택 임차 시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차입금

2)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부양가족명의로의 차입금
- ② 연말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도 공제 가능
- ③ 연중에는 무주택자였다가 연말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④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⑤ 미상환액
- ⑥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상환한 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Q&A 】

Q : 회사에서 임직원의 복지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액 공제 여부

A : 개인 간 주택임차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거주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정하므로 법인인 기업에서 지원받은 전세자금대출(주택보조금)은 공제대상 주택임차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맞벌이 부부로서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적용여부

A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요건

공제요건		세부공제요건
① 공제대상자 요건		• 연말 현재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인 근로자
② 주택요건	취득 당시	'13년 이전 차입금
		'14년~'18년 차입금
		'19년 이후 차입금
	연말현재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할 것 ※ '13년 이전 차입금은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요건도 충족해야 함
③ 차입금요건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또는 10년 이상*) • 소유권 이전(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분일 것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1. 세대주 요건

주택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 주택과 차입금의 명의가 세대주일 것 (실제 거주여부 불문)
근로자 본인이 세대구성원인 경우	•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인 근로자 명의로 되어있을 것 •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2.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3억원, 14년~18년 차입금의 경우 4억원)이하인 주택(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합니다.

※ 2005.12.31 이전 차입금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차입금 요건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금을 말합니다.

- | |
|--|
| <p>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또는 10년 이상*)
* 2015.01.01 이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일 경우</p> <p>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2000.10.31 이전 차입금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않음</p> <p>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소유자와 채무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공제 불가</p> |
|--|

4. 공제한도

차입시기	상환유형(또는 상환기간)		공제한도
11.12.31 이전 차입금	15년 이상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12.01.01 ~ 14.12.31 차입금	15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1,500만원
		상기 이외의 기타 대출	연 500만원
15.01.01 이후 차입금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1,800만원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1,500만원
		상기 이외의 기타 대출	연 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연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본인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경우
- ②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한 경우
- ③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 ④ 상환기간이 15년(2015.01.01 이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인 경우 10년) 이상이 아닌 경우
- ⑤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13년 이전 차입금 3억원, 14~18년 차입금 4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⑥ 연체이자(선납이자는 공제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Q&A 】

Q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면 모두 공제 가능한 것인가요?

A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는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자료일 뿐,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공제요건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Q : 20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 10년)이 있는 근로자가 상환기간 도중 당해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상환기간요건(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대상 해당여부

A : 상환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월경과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공제여부

A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경과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세대원인 부인명의 소유주택에 세대주인 남편명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A : 장기차입금채무자와 주택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양쪽 모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동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이 소득공제대상 해당여부

A :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일까지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가능합니다.

Q : 15년 또는 10년 미만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해연도에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

A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을 충족한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보험료의 40%(연 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자

2000.12.31 이전의 개인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한 거주자입니다.

▶ 공제금액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금액 = MIN (연간 저축불입액 X 40% , 연 72만원)

▶ 제출서류

개인연금저축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해당금융기관 또는 국세청간소화서비스

*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통장사본으로 제출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구 분	공제요건		납입한도
	2009.12.31 이전 가입분	2010.01.01 이후 가입분	
1) 청약저축	• 연말현재 세대주 •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	•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연 240만원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제출서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해당금융기관 또는 국세청간소화서비스

* 연도 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도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Q&A 】

Q :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던 중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저축이 해지된 경우에 해지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해당여부

A : 주택청약 당첨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 청약저축공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한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청약저축공제 공제여부

A : 근로소득자로서 연말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인 개인이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거주자에 대해서 출자금액 등의 10%~10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요건

공제요건	세부내용		
공제대상자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		
출자·투자범위	공제대상 출자 또는 투자	공제금액	공제한도
	①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투자 ④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을 동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연도 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	출자·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 금액의 50%
공제시기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원칙 투자자 요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선택 가능*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에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율

- 3,000만원 이하 : 100%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70%
- 5,000만원 초과 : 30%

※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음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 제출서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출자 등 소득·세액공제 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투자금액은 3,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사용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범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적용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입니다.

사용자 범위	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배우자	없음	없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없음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가족 (주거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일시퇴거 인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1)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②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 포함)에 기재된 금액
- ③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④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분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 되는 금액

- ①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 ② 현금서비스 금액 및 사용이 취소된 금액
- ③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 가능
- ⑤ 리스료
- ⑥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⑦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공납금

▶ 공제한도 (개정안)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선불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된 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② 맞벌이부부 중 상대방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③ 타인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 ④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⑥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 처리된 금액
- ⑦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 (입사 전·퇴사 후 지출액)
- ⑧ 월세액 공제를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Q&A 】

Q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 사용 시 배우자명의로 카드사용금액을 본인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기준으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금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 자녀학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현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 받을 수 없나요?

A : 현금영수증의 발행 시기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 교부받는 것으로 이미 지급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행받을 수 없습니다.

Q : 유치원 교육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공납금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 부친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모친에 대한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A : 부친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모친을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모친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나이요건 미충족으로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자녀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설정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요건

공제요건		세부내용
공제대상자	가입요건	가입당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	공제신청한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공제대상저축(펀드)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이 없을 것
공제금액		해당연도 납입금액 X 40% (연 240만원 한도)

▶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함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세액감면

▣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2021.12.31 이전에 한함)부터 5년간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간 70%,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개정)

▶ 감면대상자

-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30만불 이상)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R&D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자연계분야 학사(3년이상 연구경력포함) 및 석사 이상의 연구전담인력 5명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연구개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 감면기간 및 감면율

구 분		감면기간 및 감면율
'19.01.01 이후 입사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20.01.01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70% 감면 • 그 다음날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50% 감면
	상기 이외의 외국인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50% 감면
'19.12.31 이전 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50% 감면

▶ 감면신청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 분	감 면 요 건
감면대상자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사람
감면세액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감면신청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 감면대상자 자격요건

세 부 요 건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 참조	
•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	
•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 이상인 경우를 말함.	

▶ **감면신청**

아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감면신청자의 이름
- ㉡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 ㉢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만 34세 이하^①),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경력단절여성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한도 150만원)을 감면한다.

구 분		(재)취업 시기에 따른 감면요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감면대상자	청년 ^①	○	○	○	○	○ ^①
	만 60세 이상	○	○	○	○	○
	장애인 ^②	○	○	○	○	○
	경력단절여성 ^③	X	X	X	○	○
감면세액		50%	50%	70%	70%	70% (청년의 경우 90%)
감면한도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감면기간		3년	3년	3년	3년	3년 (청년의 경우 5년)
감면신청		• 취업일의 다음달 말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감면추징		• 감면부적격자의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105 추징 ^④				

▶ **제출서류**

감면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 MY홈택스에 접속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를 선택해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2018년 1월 1일 부터 청년의 감면 연령 확대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고엽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을 말함
- ③ "경력단절여성"이란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사한 여성이 동종 업종에 퇴직한 날로부터 3년~15년 내에 재취업한 경우를 말함
- ④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추징세액을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함

▶ **감면대상자 범위 및 요건**

구 분	세부내역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12.31 이전 : 만 29세 이하 청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을 포함 • 2018.01.01 이후 :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을 포함 • 병역을 이행한 경우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군복무기간을 차감하여 나이를 계산함*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나이가 31년 4개월이고, 군복무기간이 21개월이라면 29년 5개월에 해당하므로 "만 29세이하"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적용 • 이직한 경우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그 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감면기간 동안 감면적용 * 이직당시 만 29세/34세 이상인 경우에도 잔여 감면기간동안 감면적용
만 60세 이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1.0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나이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1.0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고엽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 "세법상 장애인"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감면대상이 아님
경력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01.01 이후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 동종 업종에 재취업할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하거나 2년 이내에 임신,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 퇴직일 당시 임신상태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Q&A 】

Q :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2012년 이후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A : 12.01.0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을 받아오다가 감면 적용기간 이내에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감면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 과세연도 중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고 감면요건을 만족한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를 말함)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금지원제도입니다. 단, 연금보험료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세액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됩니다.

구 분		세부내용
공제대상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 50세 미만 총급여 1억2천 이하 : MIN { MIN (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 + 퇴직연금납입액, 700만원 } 총급여 1억2천 초과 : MIN { MIN (연금저축납입액, 300만원) + 퇴직연금납입액, 700만원 } ▷ 50세 이상 총급여 1억2천 이하 : MIN { MIN (연금저축납입액, 600만원) + 퇴직연금납입액, 900만원 } 총급여 1억2천 초과 : MIN { MIN (연금저축납입액, 300만원) + 퇴직연금납입액, 700만원 }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X 1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

▶ 제출서류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 연금납입확인서
------	---

▶ 한도 예제

구분		연금저축(납입액)	퇴직연금(납입액)	공제대상금액
50세 미만	1억 2천 이하자	500	300	700
	1억 2천 초과자	500	300	600
50세 이상	1억 2천 이하자	500	300	800
	1억 2천 초과자	500	300	600

【 연금계좌 세액공제 Q&A 】

Q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 불입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을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시 개인 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자본인의 추가부담금은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요?

A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 부담금은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연금계좌 납입액 중 납입금액의 일부 인출을 한 경우 잔여금액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보장성보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제공기간에 공제대상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보험료(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각각 연 100만원 한도)의 12%,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요건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공제대상금액의 12%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공제대상금액의 15%

※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1)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국세청 발급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가능 (www.hometax.go.kr)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보험료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타인(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 ③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 ④ 외국의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 ⑤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부한 금액(입사 전·퇴사 후 지출액)
- ⑥ 출생 전 태아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Q&A 】

Q : 미납한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별도로 있는 것
인가요?

A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Q : 연도 중에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지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연도 중에 보험을 해지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Q : 맞벌이 부부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과 배우자인 부부공동보험의 경우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요?

A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과 배우자인 부부공동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
니다.

Q : 보험계약자가 어머니(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임)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해당 보험료
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계약자인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요건

공제요건	세부내용												
공제대상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요건 제한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진찰·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체외인공수정포함) 전액 치료·요양을 위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임차·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등 구입비 (1인당 50만원)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1항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세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의료비 구분</th> <th>공제한도</th> <th>공제대상금액</th> <th>세액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난임시술비</td> <td>전액공제</td> <td rowspan="3">① + ② + MIN{ (③-실손의료보험금-총급여액×3%), 700만원 }</td> <td rowspan="3">①의 공제대상금액 X 20% + ②와③ 공제대상금액 합계액 X 15%</td> </tr> <tr> <td>② 본인·만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td> <td>전액공제</td> </tr> <tr> <td>③ 그 밖의 부양가족</td> <td>연 700만원</td> </tr> </tbody> </table>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	의료비 구분	공제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 난임시술비	전액공제	① + ② + MIN{ (③-실손의료보험금-총급여액×3%), 700만원 }	①의 공제대상금액 X 20% + ②와③ 공제대상금액 합계액 X 15%	② 본인·만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전액공제	③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의료비 구분	공제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 난임시술비	전액공제	① + ② + MIN{ (③-실손의료보험금-총급여액×3%), 700만원 }	①의 공제대상금액 X 20% + ②와③ 공제대상금액 합계액 X 15%										
② 본인·만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전액공제												
③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 난임시술비는 관련 해당병원의 진단서와 함께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자료와 중복일 때 국세청자료에서 제외하고 해당 병원의 진료비 내역서(난임시술)금액으로 기록합니다.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간소화서비스자료 제출 가능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납입확인서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 * 간소화서비스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음 (별도의 증빙 첨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진료비납입확인서 인공수정시술확인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것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의료비영수증	의사등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의 발행한 것으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것

◆ 의료비 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 ②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공제 불가
- ③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
- ④ 간병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⑤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⑥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 ⑦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
- ⑧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⑨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 ⑩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⑪ 근로제공기간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 전·퇴사 후 지출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공제 불가
 - * 본인부담 상한액 : 보험료 수준별 하위 50%이하는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Q&A 】

Q : 전년도 지출한 의료비를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의료비에 대한 공제시기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지출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는 경우 지출한 의료비 전체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당해 연도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지출한 의료비에서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판정 전·후로 지출한 의료비를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와 장애인 의료비로 구분하여 공제신청 해야 하나요?

A : 연도 중에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판정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료비에 해당됩니다.

Q : 부양가족 중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암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비가 장애인의료비로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A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치열교정비와 사고로 인한 단순 성형수술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치료목적의 치열교정비와 성형수술비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Q : 탈모치료목적으로 전문 피부관리샵에 지출한 비용과 피부과에 탈모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A : 전문 피부 관리샵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고, 피부과에서 탈모치료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 :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

A :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배우자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인가요?

A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출산 1회당 200만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안경·콘택트렌즈를 구입하였는데 간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료비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내용이 포함된 간이영수증 가능

Q : 의료기기구입 등을 공제받기 위해 의료비 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A :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등이 발행하고 의료용 구멍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 전년도 12월에 출산하였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당해 연도에 지출한 경우 공제신청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A :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로서 공제한도를 적용한 교육비(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공제대상 교육비	일반교육비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①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 초·중·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 중·고등학생의 교복·체육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서 재료비 제외 ②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③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④ 평생교육법 ²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근로자본인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비 ②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과정의 교육비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 제외) ④ 평생교육법 ²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¹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아래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보건복지가족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③ 위의 시설 및 법인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 교육비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근로자본인</td> <td>취학전아동 ·유치원, 초·중·고등학생</td> <td>대학생</td> <td>장애인특수교육비</td> </tr> <tr> <td>전액공제</td> <td>연 300만원</td> <td>연 900만원</td> <td>전액공제</td> </tr> </table>		근로자본인	취학전아동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공제	연 300만원	연 900만원	전액공제
	근로자본인	취학전아동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공제	연 300만원	연 900만원	전액공제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X 15%									

① 16.12.31 이전에 대출받은 학자금으로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은 공제배제

② 평생교육법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직계존속과 기초수급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장애인인 직계존속과 기초수급자의 재활특수교육비로 지출한 장애인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국외교육비**

구분	국외교육비 공제대상	
국외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국내근무자	공제대상자 중 고등학생 이상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자 중 중학생 이하	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인 경우, 「국외유학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가능

* 국내근무자의 유학자녀가 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의 「유학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부칙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 부칙에 따라 유학하는 자로 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하여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 **교육비 공제시기**

구분	공제시기	관련근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한 연도	소법52③
초·중·고등학교 입학 전에 납부한 입학금	지출(선납)한 연도	원천-180, 2010.03.02
대학교(원) 입학 전에 납부한 입학금	대학(원)생이 된 연도	서이46013-10624, 2001.11.28 법인46013-334, 2001.02.10
재학 중 선납한 교육비	지출(선납)한 연도	원천-75, 2010.01.26
근무의무기간 위반에 따른 비과세교육비 반납 시	교육비 공제불가	원천-211, 2010.03.11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국내교육비	보육시설(영유아)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제공가능)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	교육비 납입증명서		
	유치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 납입증명서		
	시간제과정·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납입증명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 납입증명서		
	장애인재활교육기관	교육비 납입증명서 해당 시설·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국외교육비	국외근무자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국내근무자	고등학생 이상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중학생 이하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유학특례확인서(동거사실증명서)	• 국제교육원 • 재외공관

◆ **교육비 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 ② 타인(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 ③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금액
- ④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지출한 금액
- ⑤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⑥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⑦ 근로제공기간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 전·퇴사 후 지출액)
- ⑧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단,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연도 1월, 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가능)
- ⑨ 배우자의 시간제과정 교육비(시간제과정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Q&A 】

Q : 직원이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 교복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A : 교복 판매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교육비납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복 구입 시 발급받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첨부 시 생략가능

Q : 교복구입비를 포함하여 교육비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인가요?

A :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를 포함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Q : 유학 중인 자녀의 국외교육비는 어느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해외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근무자로서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중학생인 경우 아래의 국외유학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유학자격요건

- ①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 ② 부모 모두와 출국하여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해외파견 등으로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 후 부모 전부 또는 근로자 본인만 귀국한 경우 포함

Q :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비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및 체육시설(취학전 아동에 한함)·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는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 급식비에 포함된 우유대금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학교 급식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의 장이 급식하기로 결정하여 급식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Q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실비로 지원되는 보육비 중 비과세되는 10만원 이하의 금액도 교육비 공제대상인가요?

A : 사용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실비로 지원하는 보육비 중 10만원 이내의 비과세되는 금액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당해 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가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당해 연도에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원·어학원의 교육비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A : 학원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불하는 수강료 등은 미취학아동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기부금에 공제한도를 적용한 기부금공제금액(공제대상금액)에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곱한 금액을 해당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요건

구 분	세부내용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명의로 지급한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구 분		코드번호	공제한도	이월공제 기간
	①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20	-	-
		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② 법정기부금		10	근로소득금액 - ①	10년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X 30%	-
④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	40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X 30%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X 10% + MIN (소득금액* X 20%, 종교단체이외의 기부금(이월분 포함))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10년	
	종교단체 기부금	41			
세액 공제 금액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X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 MIN (기부금 지출액, 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구 분		세액공제율	구 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법정·지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25%			
* 14~15년 이월기부금 → 3천만원 기준(15%, 25%), 16~18년 이월기부금 → 2천만원 기준(15%, 30%)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영수증(정당후원금 정액영수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지방자치단체장, 자원봉사센터장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해당 종교단체
위 이외의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해당 기부단체

▷ 기부금 표본조사 (소득세법 영 175)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법] 제 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제 59조의 4 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소득세법 제 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포함)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 표본 조사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에 해당하는 인원내에 대하여 실시한다. (0.5%에서 1%로 대상 범위 확대)

◆ 기부금 공제 불가능한 경우의 예시

- ①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공제가능
- ②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액은 공제불가
- ③ 기부금 코드가 '50'으로 된 공제제외 기부금의 경우
- ④ 이월공제 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소멸한 기부금 이월액
- 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경우
- ⑥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 Q&A 】

Q :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기부한 금액을 노동조합장이 확인하여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기부금공제대상 노동조합비는 당해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로서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Q : 직원이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상에 기부금 코드 '50'으로 표시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대상인가요?

A : 기부금 코드 '50'은 비지정기부금으로 공제제외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Q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단에 소속된 개별교회의 경우 개별교회가 소속된 총회 또는 중앙회가 문화체육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49제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 49제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로 해당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중전근무지 포함)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12%

▶ 공제요건

공제요건	세부내용
① 세대주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② 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준주택 중 고시원 포함)
③ 거주요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세대원인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본인명으로 월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근로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세부내용
	• 주민등록표초본① 또는 주민변동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이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Q&A 】

Q :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주택에 대한 월세 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부모님께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월세를 본인이 지급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 업무용 오피스텔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 업무용 오피스텔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 주소지가 다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급처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여부
인 적 공 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 (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 (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 (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추 가 공 제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면·동 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38호서식)	의료기관
주 택 자 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기준시가 조회 화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본인 보관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본인 보관	○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투 자 조 합 출 자 공 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
신 용 카 드 등 사 용 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 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
연 금 보 험 료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
보 험 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
의 료 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
	난임시술비	진료비영수증, 인공수정등 시술확인서	병의원	
	산후조리원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일부)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급처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여부
의 료 비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일부)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의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
실손의료보험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서	보험회사	○	
교 육 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
	체험학습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	○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국외교육비	교육비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부처	○(일부)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일부)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본인 작성		
월세액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 (공공임대 주택)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	재외공관		

※ 「연말정산간소화제공여부」란에 '○'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기준시가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